

의안번호	2204130
의 퇴 인	구자근의원
회 답 일	2024.10.30.
추 계 번호	24D39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2030년까지 향후 6년간 총 1,575억 5,600만원(연평균 262억 5,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2025~2030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연평균
인건비 등	-	4,657	18,458	29,838	39,388	46,992	139,332	23,222
임차료	-	1,382	639	2,711	1,598	1,598	7,927	1,321
시스템구축비	-	10,219	-	-	-	-	10,219	1,703
설립위원회	77	-	-	-	-	-	77	13
합계	77	16,257	19,097	32,549	40,985	48,590	157,556	26,25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제1항) 진흥원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위산업 부품개발 기획 및 사업관리, 방위산업 부품 개발, 방위산업 부품 개발 대상 품목 조사·분석 및 공개, 방위산업 부품개발 관련 정책·제도 연구, 방위산업 부품개발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방위산업 부품 성능시험 수행 및 지원, 방위산업 부품 표준 개발 및 보급, 국방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중소기업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 컨설팅 및 자금융자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 대한 지원, 성과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등을 수행함(제6	의무규정 재량규정

		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7항) 진흥원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제8항)	
2	안 제18조의2 (군수품 및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국가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0	-
2	안 제18조의2 (군수품 및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	- 진흥원이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경우, 국가재정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진흥원이 무상으로 사용·대부·양여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의 목록 및 가격 관련 구체적인 자료 부재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방위산업진흥원에서 현행 국방기술품질원 내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수행하던 사업과 부품개발 사업을 추가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력을 모두 신설되는 방위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고, 부품개발기능 수행인력은 신규충원하는 것으로 가정
- 현 시점에서 방위산업진흥원의 청사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¹⁾,

본 추계에서는 방위산업진흥원의 사무공간은 임차하는 방식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신설되는 방위산업진흥원에서 방위사업청의 기존 방위산업진흥예산을 이관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부품국산화개발 연구사업비의 경우, 방위사업청의 기존 방산부품 연구개발 관련 예산사업 중 일부를 수행할 것인지, 방위산업진흥원 신규설립에 따라 방산부품 관련 연구개발사업 규모가 확대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본 추계에서는 제외함
 - 2024년 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예산 1,236억 6,900만원, 방위산업진흥 관련 예산은 2,847억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표 2] 방위산업진흥 관련 예산(2024)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2024년 예산
고유출연금	국방기술진흥연구 - 방위산업지원 (2635-307)	2,848
방사청 위탁출연금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2631-304)	123,223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 (2637-301) (컨설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2,522
	방위산업 수출지원 (2637-304)	78,857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75,192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DQ마크 인증)	106
	방산수출 진흥지원(수출시장 조사분석,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	3,559
	방산혁신클러스터 (2637-309)	12,500
	방산고도화지원 (2637-310)	64,759
	국방벤처기업 육성	10,981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지원	14,567
	방산혁신기업 100 지원사업	39,010

자료: 방위사업청

- 1)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위산업부품진흥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직, 인력, 예산 규모 등을 검토 및 구체화하기 위하여 「방산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2023년 5~12월, 예산 2억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청사 신축, 부지매입 및 인프라 구축 비용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필요하므로 별도로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표 3] 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 부품국산화개발지원사업(R&D)	123,669
연구개발연구활동비	117,923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5,300
일반관리비	46
연구용역비	400

자료: 방위사업청

-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본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방위산업진흥원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방위산업부품 국산화로 인한 수익사업을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 자체수입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본 추계는 방위사업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공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회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으로 함
 - 2025년 설립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2026~2030년까지 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²⁾함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가. 인건비 등

- (소요인력) 국방기술품질원 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력 527명을 모두 신설되는 방위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고, 부품개발기능 수행인력 405명³⁾을 신규충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신규충원인력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경비, 임차료 등을 추계함
 -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신규충원하는 부품개발기능 수행인력 405명의 인력 구성은 유사 연구기관의 인력구성(연구직 83.7%, 그 외 16.3%)을 참고하여 연구인력 339명, 그 외 인력(관리직, 기술직, 사무직 등)을 66명으로 배분함
 - 신규 소요인원을 2026~2030년까지 아래표와 같이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4] 신규 소요인원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신규충원	연구직	34	101	85	68	51	339
	그외	7	20	16	13	10	66
	합계	41	121	101	81	61	405
신규충원인력 누계	연구직	34	135	220	288	339	-
	그외	7	27	43	56	66	-
	소계(A)	41	162	263	344	405	-
기존인력(B)		527	527	527	527	527	-
합계(A+B)		568	689	790	871	932	-

자료: 방위사업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인건비 단가) 국방기술품질원 2024년 인건비 단가(연구직 11호봉 기준)에 최근 3년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9%를 적용

3) 방위사업청은 정책연구용역 「방산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 한국기계진흥원, 한국재료진흥원, 한국자동차진흥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부품소재단위 연구기관 및 국방관련 출연연구기관의 소요인력 규모 및 인력구성을 이용하여 소요인력 및 인력구성을 추정하였음

[표 5] 인건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구직 11호봉	87,118	88,774	90,460	92,179	93,931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인건비) 인건비 단가에 신규증원 인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한 인건비는 아래 표와 같음

[표 6] 인건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구직	2,962	11,984	19,901	26,548	31,842	93,238
그 외(관리/기술/사무직)	610	2,397	3,890	5,162	6,199	18,258
합계	3,572	14,381	23,791	31,710	38,042	111,496

주: 기관부담금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경상경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4년 인건비(835억 1,200만원) 대비 경상경비(186억 800만원) 비율 22.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경상경비는 아래 표와 같음

[표 7] 경상경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경상경비	797	3,207	5,305	7,071	8,483	24,86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인력 신규증원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10월)한 1인당 자산취득비⁴⁾를 적용하여 산정한 자산취득비는 아래 표와 같음

4)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공기관 설립 시 1인당 자산취득비는 아래 표와 같음

(단위: 천원)

	2026	2027	2028	2029	2030
공공기관 자산취득비	7,047	7,195	7,346	7,500	7,650

[표 8] 자산취득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자산취득비	288	870	741	607	467	2,97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인건비 등) 인력 신규증원에 따라 인건비, 경상경비, 자산취득비를 합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1,393억 3,200만원으로 추계

[표 9] 인건비 등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3,572	14,381	23,791	31,710	38,042	111,496
경상경비	797	3,207	5,305	7,071	8,483	24,864
자산취득비	288	870	741	607	467	2,973
합계	4,657	18,458	29,838	39,388	46,992	139,3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사무실 임차료

- (임차료) 임차료는 신규충원인력을 기준⁵⁾으로 규모를 산정하였으며, 현 국방기술진흥연구소⁶⁾의 임차료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단계적 증원인력을 감안하여 2026~2027년까지 보증금 7억 4,200만원에 임대료 및 관리비는 연간 6억 3,900만원으로 산정하고, 2028년부터는 전체 인력이 충원되었을 때 필요한 임차료 수준으로 상향조정함
 - － (2026~2027년 임차료) 보증금 7억 4,200만원에 임대료 및 관리비는 연간 6억 3,900만원
 - － (2028~2030년 임차료) 보증금 11억 1,400만원을 추가하여 18억 5,600만원에 임대료 및 관리비 연간 15억 9,800만원

5)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이관하는 기존인력 527명에 대한 임차료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임차료 감소분과 상계하는 것으로 가정함

6)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인당 사무면적은 10.8㎡, 면적당 임차보증금 424,351원/㎡, 면적당 연간 임대료+관리비는 365,264원/㎡임

[표 10] 임차료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증금	742	0	1,114	0	0	1,856
임대료 및 관리비	639	639	1,598	1,598	1,598	6,071
합계	1,382	639	2,711	1,598	1,598	7,927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시스템구축비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설립 시 시스템구축비는 2021년 기준 통합업무지원시스템 구축비 25억 9,200만원, 통합인프라구축비 62억원 등 87억 9,200만원이 소요되었음

[표 11]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설립 시 시스템구축비 예산(2021년)

구분	세부내용	소요예산(백만원)
통합업무지원시스템 구축비	전자결재, 포털, 메일, 시스템 망간 자료 전송, 타 정보시스템 연계 등 공통정보 시스템 구축	2,592
통합 인프라 구축비	전산실 구축	800
	IT 인프라 구축	3,749
	정보보호시스템	1,138
	공통적용 기반SW	513
	소계	6,200
합계		8,792

자료: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진흥원 시스템 구축비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설립시 소요된 시스템 구축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년 7월)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26년에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하였음

[표 12] 시스템구축비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통합업무지원시스템 구축비	3,013	0	0	0	0	3,013
통합 인프라 구축비	7,206	0	0	0	0	7,206
합계	10,219	0	0	0	0	10,219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설립위원회

- 개정안 부칙에 따라 방위산업진흥원 설립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령 공포후 1개월 이내에 구성하여 시행일까지 5개월 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표 13] 설립준비위원회

(단위: 백만원)

구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일반수용비	9	- 정책/제도 자문료 : 5명×250천원×4회 = 5,000천원 - 설립위원회 회의 준비 : 10명×45천원×5회 = 2,250천원 - 행정사무용품 등 : 1식×2,000천원 = 2,000천원
임차료	10	- 회의 장소 임차료 : 5회×2,000천원 = 10,000천원
국내여비	8	- 현장 실사/업무협의 : 5회×100천원×10명 = 5,000천원 - 업무협조 회의 : 3회×100천원×10명 = 3,000천원
정책연구비	50	- 한국방위산업진흥원 설립 관련 용역연구 : 50백만원
합계	77	-

자료: 방위사업청

마.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2030년까지 향후 6년간 총 1,575억 5,600만원(연평균 262억 5,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2025~2030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연평균
인건비 등	—	4,657	18,458	29,838	39,388	46,992	139,332	23,222
임차료	—	1,382	639	2,711	1,598	1,598	7,927	1,321
시스템구축비	—	10,219	—	—	—	—	10,219	1,703
설립위원회	77	—	—	—	—	—	77	13
합계	77	16,257	19,097	32,549	40,985	48,590	157,556	26,25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방위산업진흥원의 규모 및 예산단가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으며 신설되는 방위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할 연구사업비는 추계에 포함하지 않은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